

충청북도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3년 9월 4일
- 회부일자 : 1993년 9월 6일

3. 개정이유

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기에 대하여 중기적정 보유 및 현대화 계획추진에 따라 중기의 감량운영과 중기유지 사무간소화를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개정 준칙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중기의 의무사용 대상공사 범위축소 (조례 제4조 개정)

- 도 및 시·군 시행 도로유지 보수공사 및 재해긴급복구공사 → 사업소 시행 도로유지 보수공사 및 재해긴급복구공사

○ 중기투입계획 수립 대상공사 범위 축소 (조례 제5조 개정)

- 도 및 시·군 관리 도로유지보수공사 → 사업소 도로유지보수공사

○ 도, 시·군 도로유지보수공사에서의 관중기 사용 및 민간중기 사용 승인제 폐지 (조례 제10조 제2항 개정)

- 도, 시·군 도로유지보수 공사에 관중기 사용신청 → 도로관리사업소 보유 중기 사용신청제도 폐지
- 도로관리사업소 보유관중기 투입불가시 민중기 사용승인 → 민간중기 사용승인제도 폐지

○ 중기관리특별회계 폐지 (조례 제23조 내지 제29조)

- 중기관리특별회계 시행일시 : '94. 1. 1 → 일반회계로 이관

5. 검토의견

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 중기의 적정보유 및 현대화 계획 추진에 따라 중기의 감량운영과 중기유지 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'93.6.16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시도중기사업 개선 지침의 동 조례 준칙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의 폐지는 동 회계 세출 예산집행 등을 위하여 회계년도말까지 유예하는 것임.

6. 개정조례안 : 별 첨